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1. 27(수) 총 3매(본문 2, 붙임 1)	
담당 부서 행복주택기획과	담당 자	과장 이재평, 사무관 장창석, 주무관 오요셉 ☎ (044)201-4522, 4524	
보 도 일 시	2016년 1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 1. 27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.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

- 앞으로는 취업준비생, 석사대학원생,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.
 -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 국토부는 1.28일부터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.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

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

- 대학교(또는 고등학교)를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.

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

-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*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.

*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

③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

-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 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.

④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.

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

-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%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*를 선정할 수 있다.

* 소득·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, 지자체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음

□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.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*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보마당-법령 정보-입법예고 참조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장창석 사무관, 오요셉 주무관(☎ 044-201-4522, 45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계층별 입주자격(모집공고일 기준) 변경

계층	현행	개정
대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근(연접 시·군 포함)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· 본인·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*의 100% 이하,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(본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추가) 인근(연접 시·군 포함)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후 2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
사회초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·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% 이하(세대는 100% 이하)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추가) 인근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
신혼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·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% 이하(맞벌이시 120% 이하)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추가)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

- *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('15년 100% 473만원, 80% 379, 120% 568)
- * 부동산/자동차 : (분양전환)2억1,550만/2,794만원 (국민)1억2,600만/2,489만,
- *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필요

□ 지자체 입주자 선정 권한 확대

구분	현행	개정
우선공급	· 지자체 시행시 70% 우선공급	· 지자체 시행시 100% 우선공급
취약계층 지역제한	· 당해지역 거주시만 입주 허용	· 지자체 요구시 지역제한 폐지

□ 자녀수에 따른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

-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